

가축인공수정소 [] 개설 [] 휴업 [] 폐업
[] 영업재개 []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

※ []는 해당란에 ✓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5일
------	------	---------

신고인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	(전화번호:)

수정소	④ 명칭
	⑤ 소재지

- ⑥ 수정인원
- ⑦ 정액 확보방법
- ⑧ 휴업, 폐업,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와 그 사유
- ⑨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(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만 작성합니다)

「축산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자치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(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) 1부(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정액 ·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·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(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(휴업 ·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). 다만,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,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.
-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명칭
 - 사업장의 소재지
 - 수정사 또는 수의사
- 과태료의 징수
 -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·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